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4962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강준현 · 김남근 · 김승원  
김현정 · 박범계 · 박상혁  
양부남 · 유동수 · 윤준병  
이인영 · 정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과목 신설 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회사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피해금환급절차”를 “피해자산환급절차”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란”을 ““금융회사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하는”을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체하는”을 “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금을”을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2 중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를 ““전자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로, “서비스를”을 “서비스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한 서비스를”로, “금융회사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기이용계좌”란”을 ““사기이용계좌등”이란”으로,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계좌등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이체·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이하 “금전등”이라 한다),”로, “교부한 금전”을 “교부한 금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을 ““피해환급자산”이란 피해자산을”로,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금전을”을 “금전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금융회사와”를 “금융회사등과”로, “전자금융거래를”을 “전자금융거래등을”로 한다.

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등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및 사기이용계좌”를 “또는 가상자산 수량 및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하며, “금융회사나”를 “금융회사등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2조의4의 제목 중 “금융회사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와”를 “금융회사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2조의5의 제목 중 “이용자계좌에”를 “이용자계좌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의”를 “계좌등의”로, “송금 또는 출금을”을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계좌가”를 “계좌등이”로, “(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를 “또는 계정(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를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를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거래”를 “금융거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계좌의”를 “계좌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좌의”를 “계좌등의”로, “출금 한도”를 “출금·이전 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의”를 “계좌등의”로, “계좌를”을 “계좌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의”를 “계좌등의”로, “출금 한도를”을 “출금·이전 한도를”로 한다.

제2조의7제2항제4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를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한 정보 등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을 “피해자산을 송금·이체·이전한 계좌등을”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사기이용계좌를”을 “사기이용계좌등을”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기이용계좌를”을 “사기이용계좌등을”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금을”을 “피해자산을”로, “사기이용계좌를”을 “사기이용계좌등을”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 송금·이체·이전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피해금의”를 “피해자산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의심거래계좌에”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로,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기이용계좌에”를 “사기이용계좌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회사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 4. 피해자산을 송금·이체·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경우”를 “경우(가상자산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량 또는 산정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기이용계좌와”를 “사기이용계좌등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계좌번호”를 “계좌번호, 계정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금액”을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기이용계좌와”를 “사기이용계좌등과”로, “피해금을”을 “피해자산을”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피해금에”를 “피해자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를 각각 “전자금융거래등”으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를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계좌가”를 “계좌등이”로,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계좌가 피해금”을 “계좌등이 피해자산”으로, “계좌가”를 “계좌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거래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으로,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를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를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으로, “피해금에”를 “피해자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액에”를 “금액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에게”를 “금융회사등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회사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액”을 “금액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피해환급금의”를 “피해환급자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환급금을”을 각각 “피해환급자산을”로, “금액을”을 “금액등을”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을 “피해환급자산은 총피해자산의 금액등(이하 “총피해금액등”이라 한다)”로, “금액을”을 “금액등을”로, “금액에”를 “금액등에”로,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를 “피해자산의 금액등(이하 “피해금액등”이라 한다)의 총피해금액등에”로, “금액으로”를 “금액등으로”로, “피해금액으로”를 “피해금액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환급금의”를 “피해환급자산의”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피해환급금의”를 “피해환급자산의”로 한다.

④ 제1항의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환급되는 가상자산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게 해당 매도의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환급금을”을 각각 “피해환급자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피해금의 전액”을 “피해자산의 전부”로 한다.

제11조의2 중 “계좌의”를 “계좌등의”로 한다.

제12조 중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을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피해환급자산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급금”을 “환급자산”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가”를 “전자금융거래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좌와”를 “계좌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전자금융거래를”을 “전자금융거래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금융거래의”를 “전자금융거래등의”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피해환급금을”을 “피해환급자산을”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를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5호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피해환급금을”을 “피해환급자산을”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를 “전자금

융거래등을 처리한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u>금융회사의</u>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u>피해금</u> 환급을 위하여 <u>사기이용계좌의</u> 채권소멸 절차와 <u>피해금환급절차</u>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br>----- <u>금융회</u><br><u>사등의</u> -----<br>-----<br>----- <u>피해자산</u> -----<br>----- <u>사기이용계좌등의</u> -----<br>----- <u>피해자산환급절차</u> -----<br>-----<br>-----<br>-----<br>-----.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u>금융회사</u>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br>가. ~ 타. (생   략)<br><u>&lt;신   설&gt;</u>                                                                                            | 제2조(정의) -----<br>-----.<br>1. “ <u>금융회사등</u> ”이란-----<br>-----<br>-----.<br>가. ~ 타. (현행과 같음)<br><u>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u><br><u>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u><br><u>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u><br><u>같은 조 제4호의 가상자산</u>      |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생략)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생략)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자산을 이전하는-----

다.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라. (현행과 같음)

2의2. “전자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서비스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한 서비스를-----금융회사등의-----

3. (현행과 같음)

4. “사기이용계좌등”이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

|                                                                                                                                                                                                                                                                                                         |                                                                                                                                                                                                                                                                                                                                                                                                                                                                    |
|---------------------------------------------------------------------------------------------------------------------------------------------------------------------------------------------------------------------------------------------------------------------------------------------------------|--------------------------------------------------------------------------------------------------------------------------------------------------------------------------------------------------------------------------------------------------------------------------------------------------------------------------------------------------------------------------------------------------------------------------------------------------------------------|
|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5. “<u>피해금</u>”이란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u>계좌</u>에서 <u>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u>, 피해자가 <u>교부한 금전</u> 또는 피해자의 <u>계좌</u>에서 <u>출금된 금전</u>을 말한다.</p> <p>6. “<u>피해환급금</u>”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p> | <p><u>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u><br/><u>을 말한다.</u></p> <p>가. <u>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u></p> <p>나. <u>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u></p> <p>다. <u>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u></p> <p>라. <u>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등</u></p> <p>5. --<u>피해자산</u>-----<br/>-----<br/><u>계좌등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이체·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이하 “금전등”이라 한다),-----교부한 금전등-----</u><br/>-----.</p> <p>6. “<u>피해환급자산</u>”이란 <u>피해자산을</u>-----<br/>-----<br/>-----</p> |
|---------------------------------------------------------------------------------------------------------------------------------------------------------------------------------------------------------------------------------------------------------------------------------------------------------|--------------------------------------------------------------------------------------------------------------------------------------------------------------------------------------------------------------------------------------------------------------------------------------------------------------------------------------------------------------------------------------------------------------------------------------------------------------------|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

금융회사등이-----

-----금전등을-----.

7. -----금융회사등과-----전자금융거래등을-----

--.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피해환급자산-----

또는 가상자산 수량 및 사기이

용계좌등-----

-----

-----금융회사등이나-----

-----

-----

-----

-----.

1. 금융회사등-----

-----

-----

2. 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거래

등-----

-----

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  
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  
한 사항

③ · ④ (생략)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

\_\_\_\_\_

\_\_\_\_\_

\_\_\_\_\_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  
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등은-  
-----  
-----  
-----  
-----  
-----  
-----  
-----

1. -----금융회사등에-----  
-----

2. ----- 금융회사등과 -----  
-----  
-----  
-----

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

-----

② 금융회사등은-----  
-----  
-----  
-----  
-----.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등은-----  
-----  
-----계좌등  
의-----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  
을-----  
-----  
-----.

1. -----  
-----  
-----계좌등이  
-----  
-----  
-----또는 계정(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  
-----  
-----

2. -----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

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  
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  
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  
· 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등으로-----  
-----

② 금융회사등은-----  
-----  
-----  
-----.

③ 금융회사등은-----  
-----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  
좌등에-----  
-----.

④ 금융회사등은-----  
-----  
-----  
-----  
-----  
-----.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  
-----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생략)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의 행위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  
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금융회사등은

1. -----계좌등의-----  
-----
2. -----계좌등  
의-----출금·이전 한  
도-----
3. (현행과 같음)
- ② 금융회사등은-----  
-----  
-----  
-----.
- ③ 금융회사등은-----  
-----  
-----  
-----  
-----
- 계좌등의-----

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 (생략)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계좌등을-----  
-----.

④ 금융회사등은-----  
-----  
-----  
-----  
-----  
계좌등의-----출금·이  
전 한도를-----.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자산-----

5. -----  
사기이용계좌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

6. (현행과 같음)

7. -----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한 정보 등에-----  
-----

· 법인 · 단체로의 정보 전과

8. (생략)

③ · ④ (생략)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

8.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  
-----  
-----  
-----피해자  
산을 송금 · 이체 · 이전한 계좌  
등을-----금융회사등---  
--사기이용계좌등을-----  
금융회사등에-----사기이용  
계좌등의-----  
-----  
-----.

② -----사기이용계좌등  
을-----금융회사등에---  
-----  
-----사  
기이용계좌등의-----  
-----.

③ -----  
-----  
-----  
-----피해  
자산을-----사기이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  
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  
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  
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  
자·피해금의 통지에 관한 방  
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  
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  
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용계좌등을-----금융회사  
등에-----.

④ -----  
-----  
-----금융회사등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  
좌등으로 피해자금이 송금·이  
체·이전된 경우 해당 금융회  
사등에-----  
-----  
-----.

⑤ -----  
-----  
-----  
-----피해자금의-----  
-----  
-----.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등은  
-----  
-----  
-----  
-----사기이용계좌등으로-----  
-----  
-----사기이용계좌등의-----  
-----  
-----.

|                                                                                                                                                                                   |                                                                                                                                     |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u>사기이용계좌</u> 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2. -----<br>-----<br>-----<br>-----<br>----- <u>사기이용계좌</u> 등으로-----<br>-----                                                        |
|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u>피해 의심거래계좌</u> 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u>사기이용계좌</u> 로 추정되는 경우                                                                                                           | 3. ----- <u>피해 의심거래계좌</u> 등에-----<br>----- <u>사기이용계좌</u> 등으로-----                                                                   |
| 4. 제15조제3항에 따라 <u>사기이용계좌</u> 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4. ----- <u>사기이용계좌</u> 등에-----<br>-----                                                                                             |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
| ② <u>금융회사</u> 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u>금융회사</u>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 ② <u>금융회사</u> 등은-----<br>-----<br>-----<br>-----<br>-----<br>-----<br>-----<br>----- <u>금융회사</u> 등의-----<br>-----<br>-----<br>----- |

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생략)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6. (생략)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생략)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  
-----  
-----.

1. -----사기이용계좌등의-----  
-----

2. (현행과 같음)

3. -----  
-----금융회사등에-----  
-----

4. 피해자산을 송금·이체·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5.·6.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은-----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  
-----사기이용계좌등의-----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등은-----  
-----  
-----  
-----  
-----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사기이용계좌등의-----

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 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생략)

4.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  
-----  
-----경우(가상자산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해당  
하는 수량 또는 산정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금융회사등에-----  
-----  
-----.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사기이용계좌등과-----금  
용회사등-----  
-----계좌번호, 계정정보

3. (현행과 같음)

4. -----  
-----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금액등”

5. ~ 8. (생략)

③ (생략)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2. (생략)

이라 한다)

5.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  
-----  
-----사기이용계좌등의-----  
-----  
-----금융회사등  
에-----  
-----  
-----.

② -----  
-----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자  
산을-----  
-----금융회사  
등에-----.

③ 금융회사등은-----  
-----  
-----피해자산에-----  
-----  
-----.

1. 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  
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회사등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 ① -----

--- 전자금융거래등 ---  
 ---  
 ---  
 --- 금융회사등  
 에 --- 전자금융거래등 ---  
 ---  
 ---

1.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  
등이-----

2. -----  
-----  
-----

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  
 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  
 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  
 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  
 을 한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  
 -----계좌  
등이-----  
 -----사기이용계좌등으  
로-----  
 -----  
 -----  
 -----  
 -----  
 -----  
 -----  
 -----  
 -----  
 -----

3. -----계좌등이 피해자산-----  
 -----계좌등이-----  
 -----  
 -----

② 금융회사등은-----  
 -----  
 -----  
 -----  
 -----  
 -----  
 -----금융회사  
등에-----  
 -----  
 -----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 1의2. (생략)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생략)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등-----

-----사기이용계좌등의-----

-----전자금융거래등-----.

-----전자금융거래등-----.

1. 1의2. (현행과 같음)

2. -----  
-----.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등에-----.

3. -----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

4. 피해환급자산-----  
-----

5.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생략)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사기이용계좌등에 예  
치된 금액등-----  
-----피해자산에-----

2.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  
-----  
-----  
-----  
-----  
-----금융회사등에-----  
-----.

제9조(채권의 소멸) ① -----  
-----  
-----  
-----  
-----금액등에-----  
-----  
-----  
-----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3. (생략)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  
-----  
-----  
-----  
-----  
-----금융회사등에게-----  
-----  
-----  
-----금융회사등의-----  
-----  
-----.

1. (현행과 같음)
2. -----금액등
3. (현행과 같음)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지급) ① -----

-----  
-----  
-----피해환급자산  
을-----금액등  
을-----  
-----  
-----금  
용회사등에-----  
-----금융회사등은-----  
-----피해환급자산을-----  
-----.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그 밖에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② -----피해환급자산은 총 피해자산의 금액등(이하 “총피해금액등”이라 한다)-----  
---금액등을-----  
-----금액등에-----  
피해자산의 금액등(이하 “피해금액등”이라 한다)의 총피해금액등에-----금액등으로-----  
-----피해금액등으로-----.

③ -----  
-피해환급자산의-----  
--금융회사등에-----  
-----.

④ 제1항의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환급되는 가상자산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게 해당 매도의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피해환급자산의-----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 ~ 4. (생략)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

제11조(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

-----피해환급자산을-----.

1. -----

---피해자산의 전부-----

-----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

-----

-----

---계좌등의-----

-----

-----

-----.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피해환급자산을-----

-----

-----

-----

-----.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생략)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  
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  
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  
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  
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  
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  
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  
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  
다.

1. (생략)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  
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  
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환급자산------  
-----  
-----  
--.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등의 명  
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  
제한) ① -----

-----  
-----  
-----  
-----  
-----  
-----  
-전자  
금융거래등이------  
-----  
-----  
-----.

1. (현행과 같음)

2. -----  
-----  
-----  
-----  
-계좌등과------  
-----

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생략)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통보하

-----  
-----  
-----  
-----  
-----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③ 금융회사등은-----  
-----  
-----전자금융거래등을-----  
-----.

④ -----  
-----  
-----  
-----  
-----  
-----  
-----  
-----  
-----  
-----  
-----전자금융거래등의-----  
-----  
-----  
-----  
-----  
-----금융회사등-----

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제공하거나

-----.

제14조(수수료) -----  
피해환급자산을-----  
-----  
-----  
-----.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  
-----  
-사기이용계좌등으로------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회사등-----  
-----  
-----  
-----  
-----  
-----  
-----  
-----  
-----  
-----

공고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의2.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 의심거래계좌등에-----

-----.

제18조(과태료) ① -----

-----.

1. -----

금융회사등

2. -----

금융회사등

2의2. -----

|                                                                     |                                                     |
|---------------------------------------------------------------------|-----------------------------------------------------|
| 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u>금융회사</u> | -----<br>-----<br>-----<br>----- <u>금융회사등</u>       |
| 2의3.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u>금융회사</u>              | 2의3. -----<br>-----<br>----- <u>금융회사등</u>           |
|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u>금융회사</u>           | 3. -----<br>-----<br>----- <u>금융회사등</u>             |
| 4.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u>금융회사</u>  | 4. -----<br>-----<br>-----<br>----- <u>금융회사등</u>    |
|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u>금융회사</u>                 | 5. -----<br>-----<br>----- <u>금융회사등</u>             |
|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u>피해환급금</u> 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u>금융회사</u>          | 6. ----- <u>피해환급자산을</u> -----<br>----- <u>금융회사등</u> |
| 7.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u>전자금융거래</u> 를 처리한 <u>금융회사</u>                  | 7. -----<br><u>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한 금융회사등</u>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 ② -----<br>-----                                    |

|                                                                                                                                                                                                                                                             |                                                                                                                                                                            |
|-------------------------------------------------------------------------------------------------------------------------------------------------------------------------------------------------------------------------------------------------------------|----------------------------------------------------------------------------------------------------------------------------------------------------------------------------|
| <p>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br/>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u>금융회사</u></p> <p>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br/>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br/>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br/>하지 아니한 <u>금융회사</u></p> <p>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br/>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br/>통지하지 아니한 <u>금융회사</u></p> <p>③ (생 략)</p> | <p>-----.</p> <p>1. -----<br/>-----<u>금<br/>융회사등</u></p> <p>2. -----<br/>-----<br/>-----<u>금융회사등</u></p> <p>3. -----<br/>-----<br/>-----<u>금융회사등</u></p> <p>③ (현행과 같음)</p> |
|-------------------------------------------------------------------------------------------------------------------------------------------------------------------------------------------------------------------------------------------------------------|----------------------------------------------------------------------------------------------------------------------------------------------------------------------------|